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KOTRA-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CONTENTS

Part I 국내복귀기업 선정

- 01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 02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 03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사후관리 및 완료기한

Part II 지원제도

- 01 입지·설비 보조금
- 02 세제 지원
- 03 인력 고용 지원
- 04 보증·보험 지원
- 05 금융 지원
- 06 입지, 스마트공장 및 R&D 지원
- 07 지식재산권 지원
- 08 구조조정 컨설팅

Part III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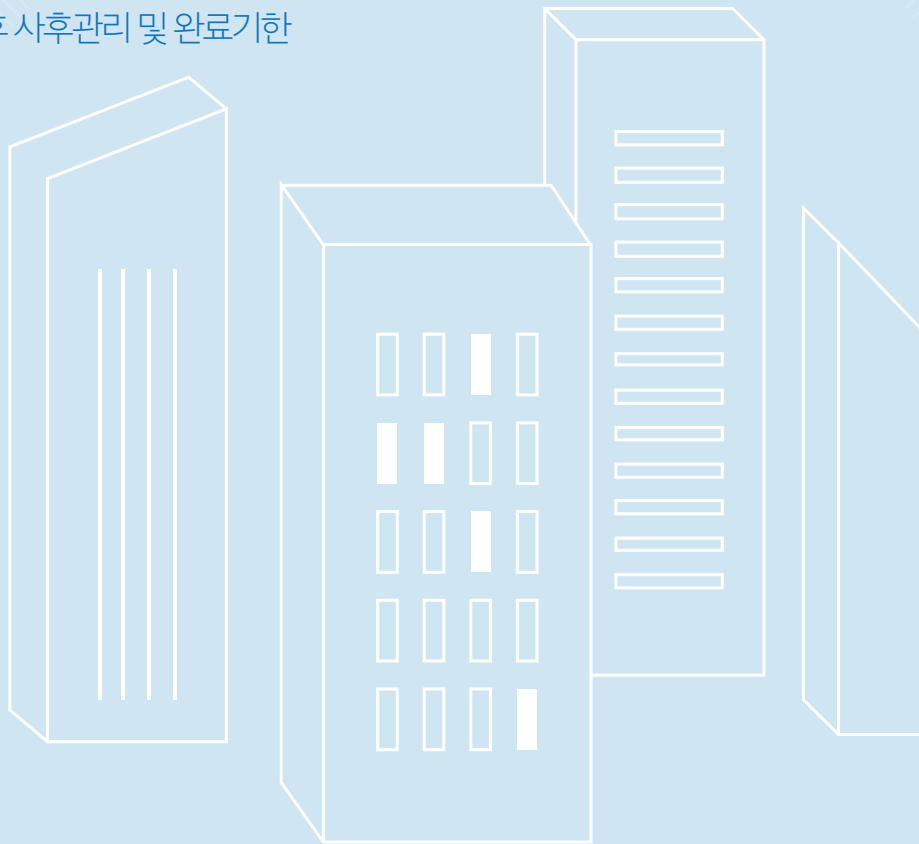
- 01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 조직

Part

I

국내복귀기업 선정

-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사후관리 및 완료기한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선정요건

01 2년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 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이상 운영

02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지분 30%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0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04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 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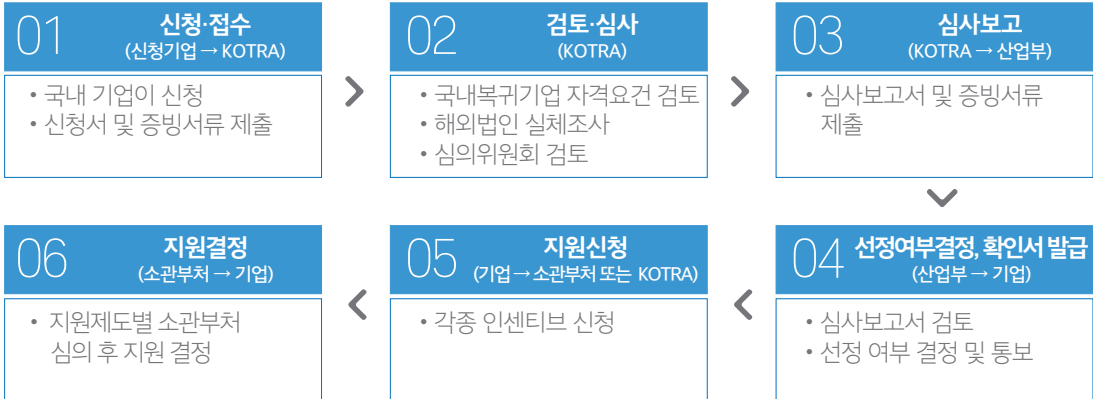
※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국내복귀기업 유형

국내	복귀유형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유형 1 • 청산 또는 양도	신설
	유형 2 • 생산량 축소 또는 유지	신설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유형 3 •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유형 4 • 생산량 축소	신·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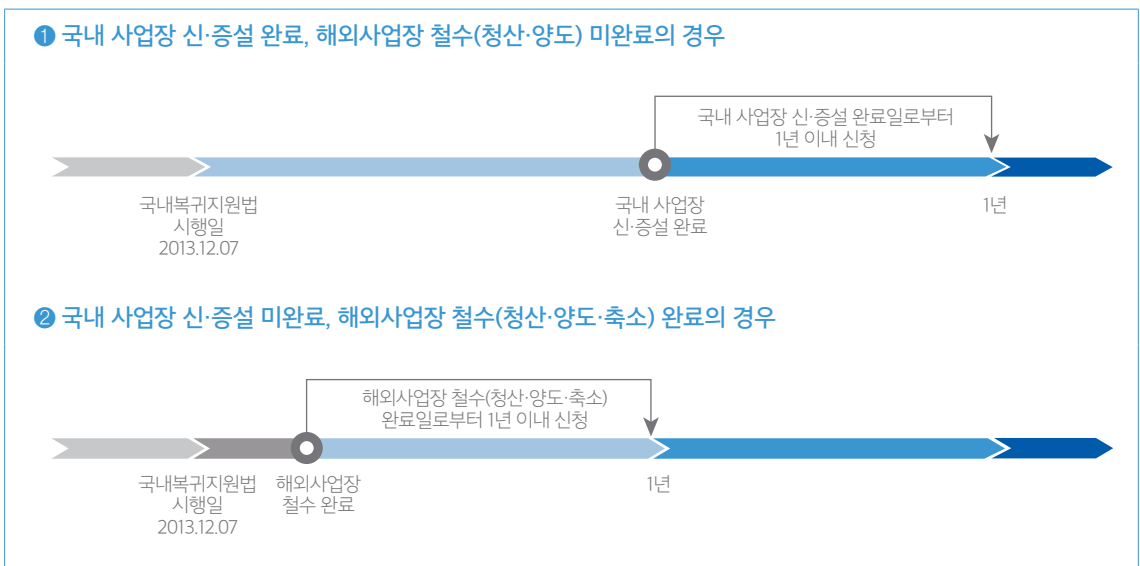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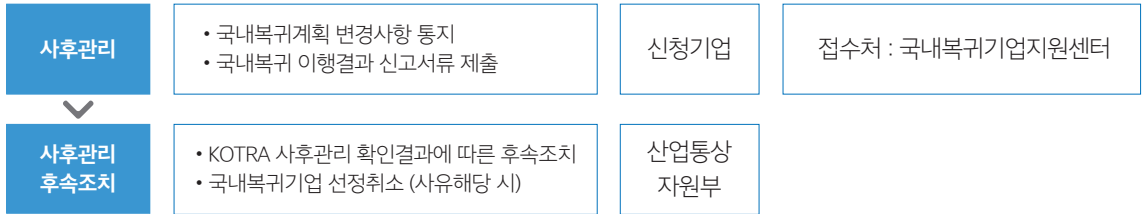
신청방법 및 기한

- ▶ 제출방법 : 신청서 원본 우편송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스캔본 e-mail 송부
- ▶ 제출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주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KOTRA 유턴지원팀
 - 문의 : 02-3460-7361~5 / sc.kim@kotra.or.kr, jyjunga@kotra.or.kr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사후관리 및 완료기한

선정이후 사후관리



국내복귀 완료기한

▶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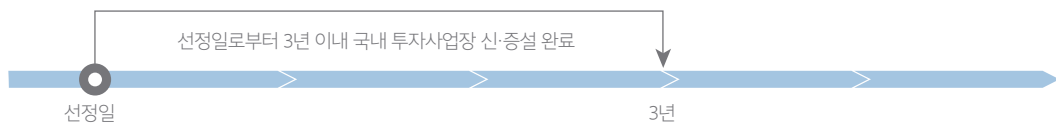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증설 기한을 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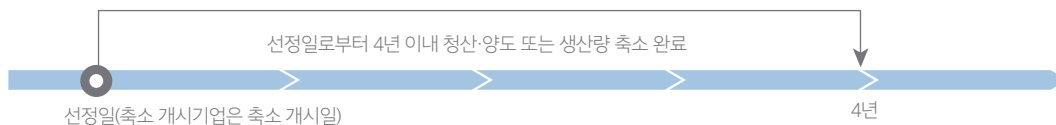
▶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 기한

해외 사업장	완료기한
청산 · 양도	·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축소	· 축소 개시기업은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축소 미개시기업은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①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② 해외 사업장 철수 기한(청산, 양도 또는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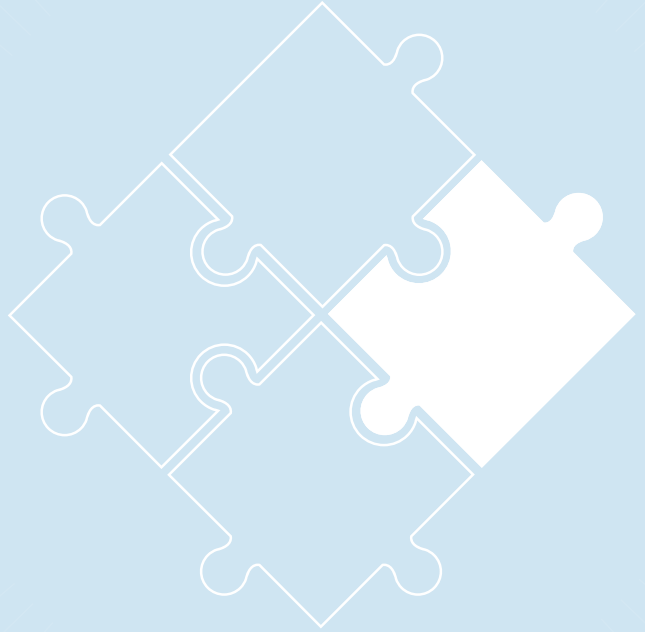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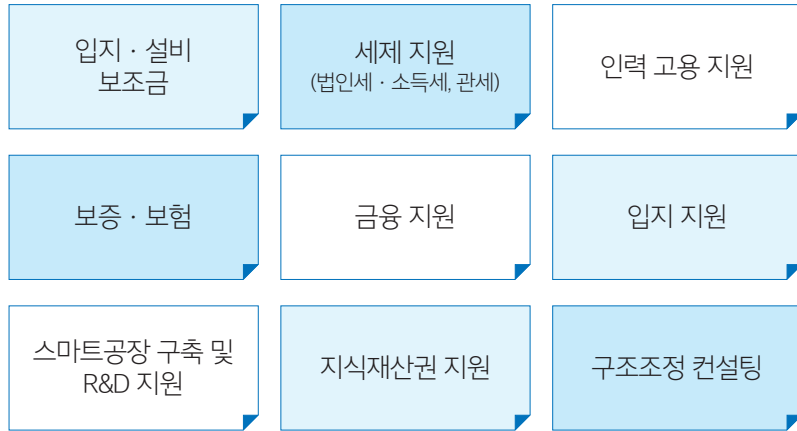
지원제도

-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
- 세제 지원
- 인력 고용 지원
- 보증· 보험 지원
- 금융 지원
- 입지, 스마트공장 및 R&D 지원
- 지식재산권 지원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제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국내복귀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기업 유형	복귀 지역	보조금		세제		인력			보증·보험 우대	입지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 컨설팅	금융	R&D	지적 재산권
		입지	설비	법인·소득세	관세	고용 창출 장려금	비자 (E7)	외국인 고용 (E9)							
중소·중견 기업	비수도권	○	○	○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	×	○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	×	×	×	×	○	○	○	○	×	○	○	○	○	○
대기업	비수도권	×	○	○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	×	○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	×	×	×	×	×	○	×	○	×	×	×	×	○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 비수도권에 입주할 것
- ▶ 국내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일 것
-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 ※ 단,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점 이상

지원 내용

- ▶ 입지, 설비 보조금 합산 국비 지원액은 최대 100억 원 이내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입지 : 토지매입가액, 설비 : 설비투자금액 기준)			총 보조금 중 국가보조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	-	9%이내	45% 이내
	설비	6%이내	8%이내	11%이내	
일반지역	입지	-	10%이내	30%이내	65% 이내
	설비	8%이내	11%이내	14%이내	
지원우대 지역	입지	-	20%이내	40%이내	75% 이내
	설비	11%이내	19%이내	24%이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등	입지	-	25%이내	50%이내	75% 이내
	설비	14%이내	24%이내	34%이내	

- 수도권 인접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
- 일반지역** >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우대 지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개발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새만금사업지역,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 3년 경과된 분양률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단
-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해남

※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 지역 구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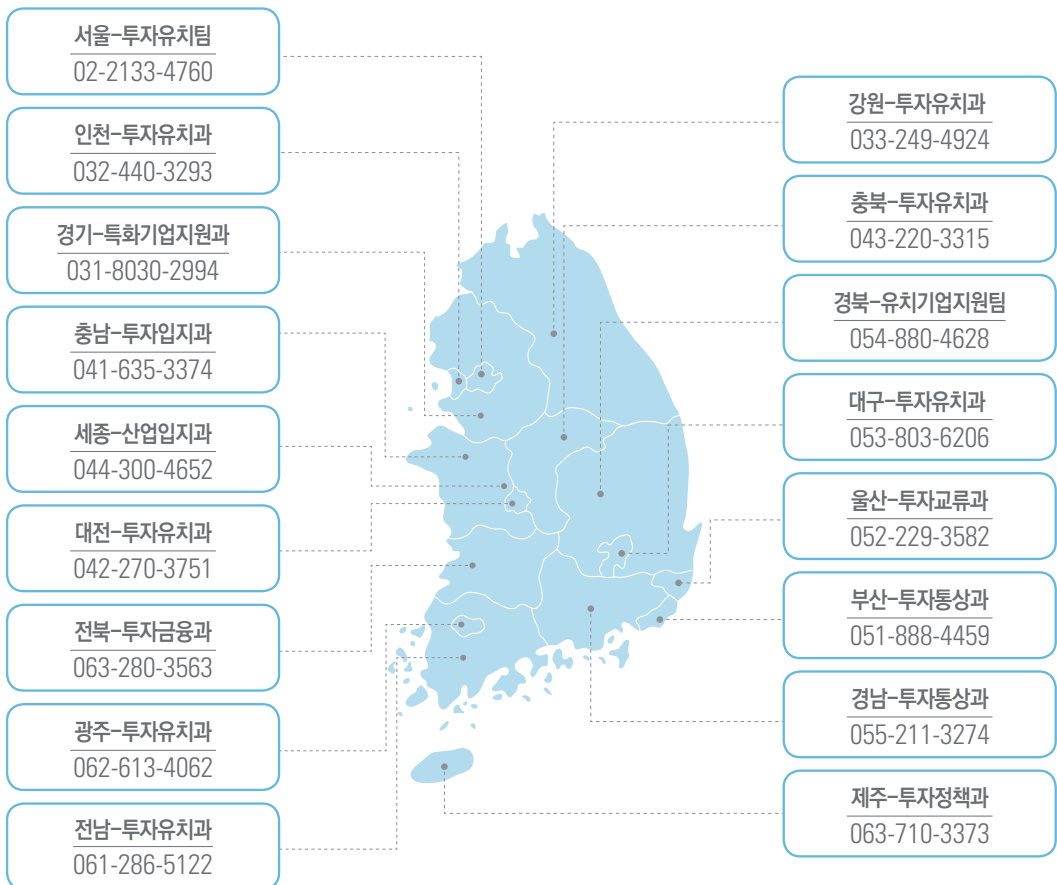
신청방법 및 기한

설비보조금만 신청	입자+설비 보조금 신청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 신청기한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제출되는 기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 필요

* 단, 입지보조금만 별도신청은 불가

문의처



세제 지원

지원 조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입주할 것
- ▶ 창업하거나 신·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것
- ▶ 해외사업장을 부분 축소(생산량 50% 이상)하거나 유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할 것
- ▶ 복귀 전·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할 것

지원 내용

법인세

- ▶ 신·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감면
 - 단,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수도권	수도권 이외
청산·양도	5년간 100% + 2년간 50%	5년간 100% + 2년간 50%
축소·유지	3년간 100% + 2년간 50%	

* 증설의 경우, 감면한도 설정 예정

관세

- ▶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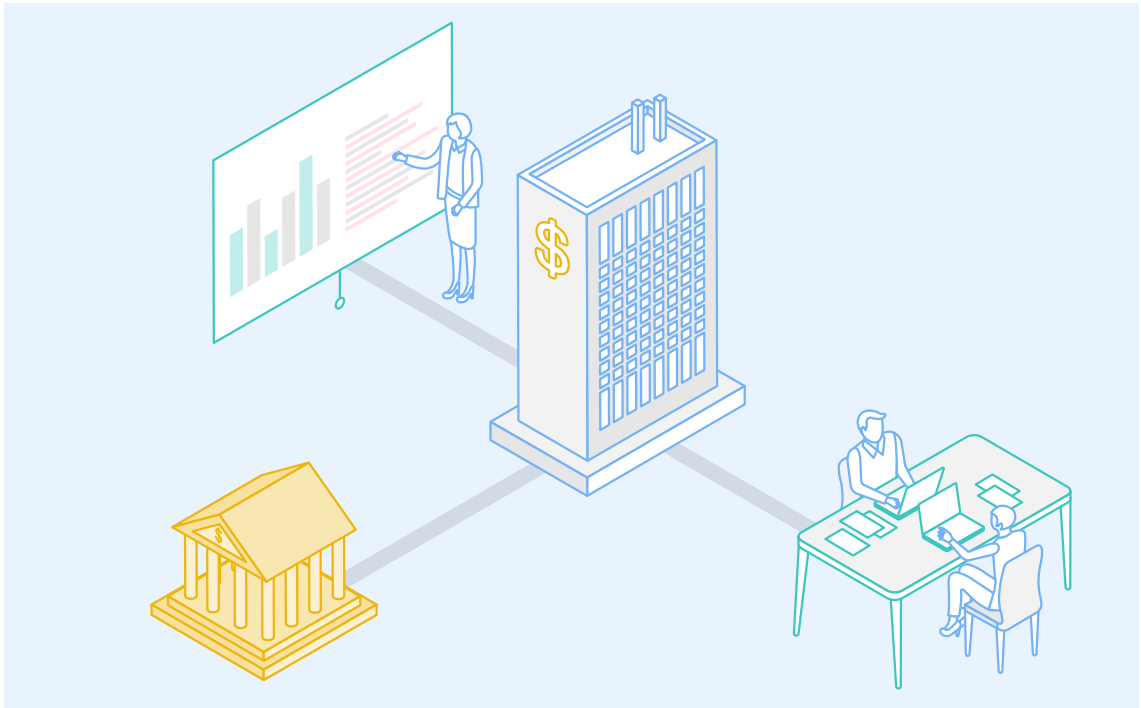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관세감면율
청산·양도	신설 또는 증설	100%
축소·유지		50%

신청시기·신청장소

	법인세	관세
신청시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신청장소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	관세청,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 •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 해외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미 완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신청서 1부 • 관세 감면 신청서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문의처 : 국세청 126 홈페이지 참조 : www.nts.go.kr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5



인력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부터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300명 이하

나. 지원 내용

- ▶ 사업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 결정
 - * 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한도 100명)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3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년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매 3개월마다 신청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

E-7 발급 지원

신청 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

자격 요건

- 해외현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
-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무역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 ▶ 국내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을 산정

 문의처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5 /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88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9 발급 지원

신청 대상

- ▶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기업
- ▶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토지제외)를 완료한 기업

지원 내용

- ▶ 기존 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추가 허용한도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0인 이상	40인 이하	

- ▶ 한국어능력시험 등 E-9 비자 자격을 충족한 해외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신청가능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가점

지원 내용

-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가점(3점) 부여

문의처 : 병무청 1588-9090



보증·보험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 ▶ 대상 자금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 ▶ 보증 한도 : 적용 매출액의 1/3~1/2
* 적용매출액은 신용보증기금의 기준에 따른 추정매출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추정 불가능 시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적용
- ▶ 보증 비율 : 90% 부분보증비율 적용
- ▶ 보증료 : 0.2%p 차감 보증료를 적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구분	기술력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대상	•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우대지원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5%p 감면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대상자금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추가 인센티브	• 매출액 적용없이 지원하는 운전자금보증금액 확대 (기업당 2억원까지) • 국내복귀기업을 '우대보증'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증심사시 우대	
연계지원	• Scale-up 기업에 대해서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 국내복귀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시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우선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무역(수출) 보험·보증 지원

지원 내용

- ▶ 보험(보증)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보험(보증)료 20%이내 할인 및 수출신용보증(매입) 0.1%p 차감 할인
- ▶ 한도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및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책정가능 한도 1.5배 우대
- ▶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특별보증 지원 예정(2020년 하반기)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금융 지원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

지원 내용

-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활용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
 - 산업은행 · 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시설투자 자금지원
 - * 전통 주력 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를 위한 금융위원회 지원 프로그램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사업재편' 분야의 '사업장 이전 및 재배치' 유형에 해당)

문의처 : 금융위원회 02-2100-2500,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88-2588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2020년 한시운영)

지원 내용

- ▶ 해외 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 2020년 내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 최저 1.5% 금리 적용(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
 - 대출만기 최대 15년으로, 2024년 말까지 만기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
 - *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 적용

문의처 : 금융위원회 02-2100-2500 / 산업은행 1588-1500 / 기업은행 1588-2588

수출촉진자금 대출 금리우대

지원 내용

-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시 금리 우대
 - (자금용도) 시설투자, 수출품목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작자금 등
 - (대출금액)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우대내용)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0.3%p 금리 우대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입지, 스마트공장 및 R&D 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 특례

지원대상

- ▶ 비수도권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내용

- ▶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가능
- ▶ 국내복귀기업에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 특례(재산가액 1% 이상) 및 감면(최대 50%)
- ▶ 국·공유지 매입시 매입대금 지불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1년 범위에서 납부기일 연기 및 20년 한도 분할 납부 가능)

 문의처 : 관할 지자체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내용

- ▶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000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내용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시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확대
 - 자동화솔루션 구축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총 사업비의 50%, 구축 1.5억원, 고도화 2억원 이내)
 - 제조기업 로봇도입 공정혁신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총 사업비의 50%, 3억원 이내)
- ▶ 국내복귀기업에 한해 자금 대출 심사 시 부채비율 심사 면제(45억원 한도)

 문의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1644-1736

산업기술 R&D 지원

지원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 R&D 사업 신청 시 국내복귀기업에 가점 부여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4 KOTRA 유턴지원팀 02-3460-7361~5

지식재산권 지원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 우대(2020년 사업공고 예정)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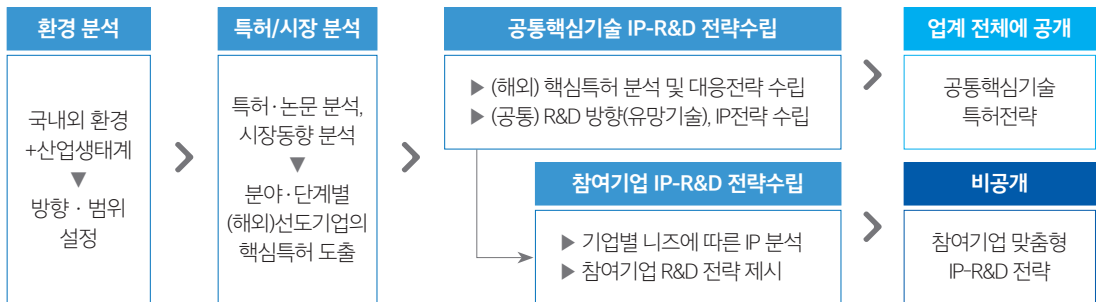
- ▶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우대내용

- ▶ 특허청에서 공고하는 IP 전략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 ▶ 환경분석, 특허/시장분석, 공통핵심기술 IP-R&D 및 참여기업 IP-R&D 전략 수립 등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우대(2020년 사업공고 예정)

지원대상

- ▶ 국내복귀기업 중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견 기업(스타트업 포함)

우대내용

- ▶ 특허청에서 공고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 ▶ 분쟁특허 조사 및 회피설계, 대상 특허 무효화 등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전략 제공

구조조정 컨설팅

대상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업종 제외)

- ▶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 8개국
- ▶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의 해외법인
- ▶ 해외사업장 청산 등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국내복귀 미선정기업도 지원가능
 - 신청하는 모 기업이 존재해야 함

지원 내용

- ▶ KOTRA 등록 컨설팅회사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구조조정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 이용금액의 50~70% 지원(지원한도: 2만 USD/컨설팅 회사에 지급)
- ▶ 구조조정 컨설팅 내용

① 구조조정모델 제안 (청산, 매각, 양도, 축소 등)	② 청산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조조정모델에 대한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구조조정별 비용 추정 및 최적화 모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청산전략 및 계획 수립 • 청산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대행(이사회 소집, 채권정리 공고, 신문공고, 청산위원회 등) * 행정대행(등기말소 등) • 청산법무, 노무 서비스 등
③ 축소 대행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축소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매각(또는 지분양도)전략 및 계획 수립 • 매각(또는 지분 양도)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매각(또는 지분 양도)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신청 시기

- ▶ 연중 상시 (단, 신청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완료 이전에 신청해야 함)

제출서류

국내복귀선정기업	국내복귀선정기업 이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국내법인에 관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 • 해외법인에 관한 서류(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재무제표 등)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 보고서 등)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Part

III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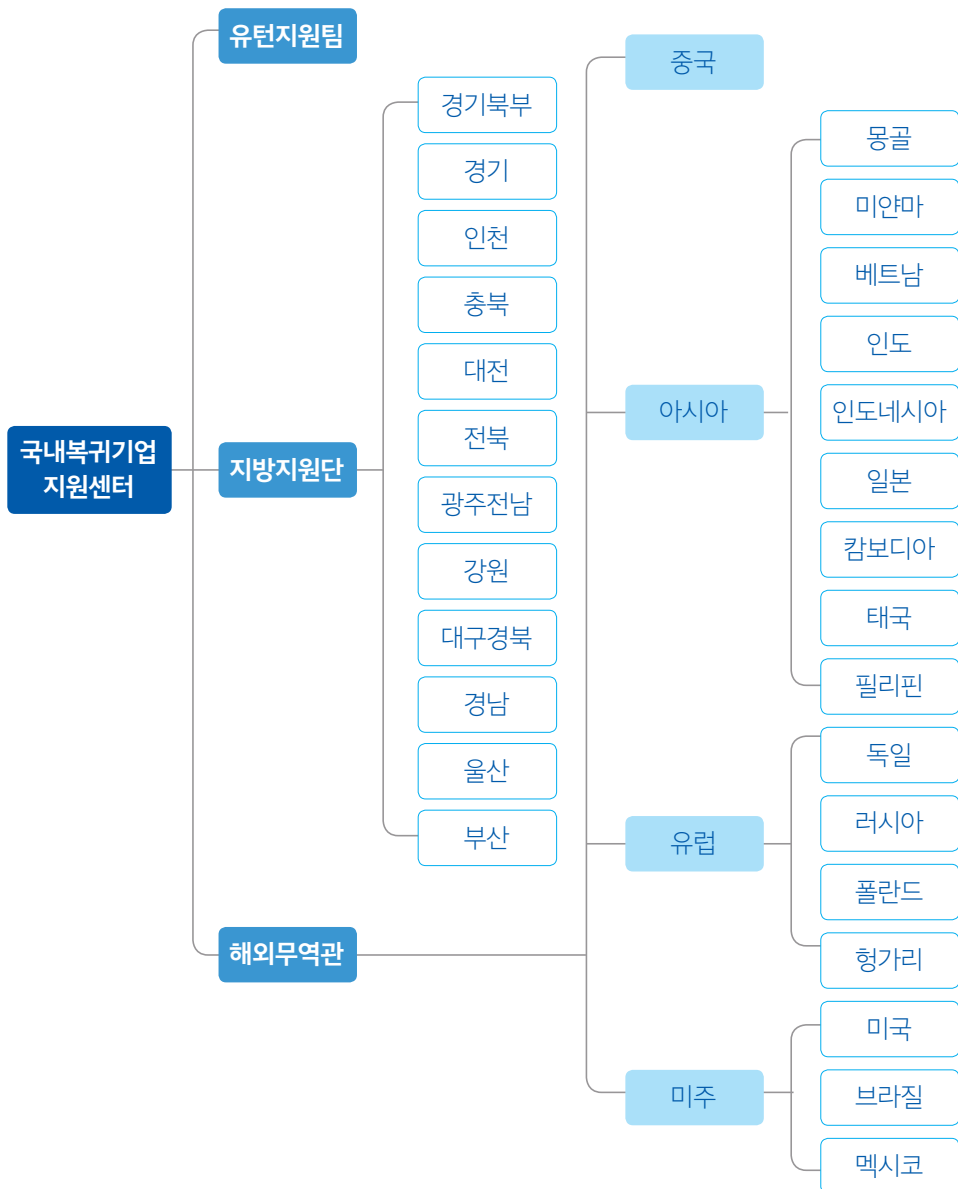
·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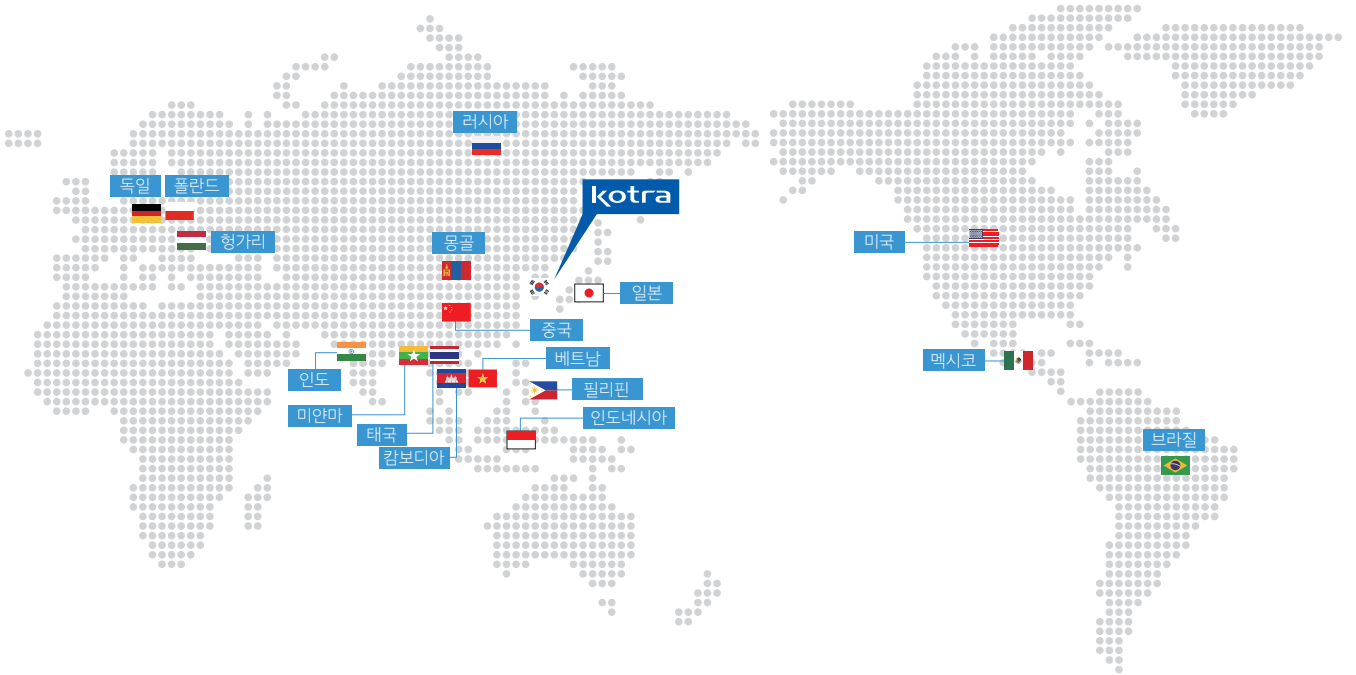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 조직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유턴지원팀은 해외 유턴데스크(해외무역관) 및 국내 지방지원단과 함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조직도





경기북부 경기북부지원단
070-7931-0743

인천 인천지원단
032-822-9363

경기 경기지원단
031-273-6032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원단
042-862-8313

전북 전북지원단
070-7931-080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원단
062-369-9055



강원 강원지원단
070-8822-5311

충북 충북지원단
070-4185-6949

대구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2

경북 대구경북지원단 구미분소
054-455-2971

울산 울산지원단
052-289-8057

부산 부산지원단
051-740-4152

경남 경남지원단
055-290-061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T 02 3460 7361~5

발행일 2020년 3월